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6월 8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68 호

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, 제41조, 제46조 제2항, 제3항, 제46조의3, 제49조 관련 징계 양정기준, 제56조의2, 제56조의3, 별표3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, 별표5 훈련성적 평정 배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.

제4조의3(채용 공정성 관리)

각 전형단계별 시험위원은 평가대상이 4촌 이내의 혈족, 근무경험관계 등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·기피·회피를 신

청해야 하며 제척·기피·회피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시험위원의 평가결과
는 반영하지 않는다.

제41조(소집 및 의결)

⑤ 징계사항 심의 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2. 위원이 징계처분 요구된 사유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

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
는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서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.

제46조(직원의 징계)

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
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징
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.

③ 중징계란 파면, 해임, 정직,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, 견책을
말한다.

제46조의3(부동산의 취득 제한 등) ① 개발사업 관련 직원 및 그 이
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자기의 명의를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

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

2. 직무상 직·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 각목의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

가. 후보지 선정 등 개발 관련 정보

나. 개발계획, 실시계획, 사업계획 등 사업 관련 정보

다. 판매, 공사, 용역,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

라. 토지 등 소유자,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개인정보

②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개발사업 관련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변동신고 의무자인 개발사업 관련 직원은 공직윤리시스템(www.peti.go.kr)에 부동산 등록 및 신고 한 것을 공사에 부동산 등록 및 신고 한 것으로 본다.

④ 개발사업 관련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감사부서에서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 및 조사에 응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.

제56조의2(채용비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)

사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,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해서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
제56조의3(사적이해관계자 제척·기피·회피 적용) ① 공사·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·구매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·직원은 해당 직무의 직무관계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사적이해관계자를 제1항의 사적이해관계자와 다르게 정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다만, 해당직무의 성격상 사적이해관계자를 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③ 제척·기피·회피의 신청절차, 방법,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해당직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3]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관련)

구 분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	1차	2차		
일반직	부장	본부장		사장	
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	미래기획부(팀장)	부장		사장	
	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	미래기획부(담당)	팀장	부장	사장	

※ 본부장 및 미래기획부 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[별표5]

훈련성적 평정 배분표(제35조관련)

가. 훈련성적 평정 부여기준

훈련성적 평정		15	13	11	9	7	5
교육 마일리지	일반직	50이상	40이상	30이상	20이상	10이상	5이상

[별표7]

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0. 부동산의 취득제한 위반							
가. 타인명의 등 부정당한 행위로 취득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직무상 정보 활용 취득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○					
다. 관련 업무 분야 등 취득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○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라. 부동산 등의 거래 신고 및 등록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징계 사유	징계 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1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							
가. 법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법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다.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○					
라.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징 계 사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다.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·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·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 조치결정 미이행 ·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·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바.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12. 기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비고. 1. 음주운전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2.10>

2.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
3.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.
4. 비밀누설의 적용 대상 정보는 개발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모든 기관 정보를 의미하고 적용 대상자는 직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·직원까지 포함한다.
5.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 9 0 - 7 6 1 5)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3(채용 공정성 관리) <신 설></p>	<p>제4조의3(채용 공정성 관리) 각 전 형단계별 시험위원은 평가대상이 4촌 이내 혈족, 근무경험관계 등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·기피·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제척 ·기피·회피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.</p>
<p>제41조(소집 및 의결) ① ~ ④ (생 략) ⑤ <신 설></p>	<p>제41조(소집 및 의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징계사항 심의 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 척된다. 1.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. 위원이 징계처분 요구된 사유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 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서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.</p>
<p>제46조(직원의 징계) 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“별지 제 18호서식” 내지 “별지 제21호서식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46조(직원의 징계) ① 사장이 직 원을 징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“별 지 제18호 서식” 내지 “별지 제21호 서식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</p>

<p>제46조의3(부동산의 취득제한 등) <신 설></p>	<p>여야 한다.</p> <p>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.</p> <p>③ 중징계란 파면, 해임, 정직,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, 견책을 말한다.</p> <p>제46조의3(부동산의 취득제한 등)</p> <p>① 개발사업 관련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기의 명의를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. 직무상 직·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나. 개발계획, 실시계획,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 다. 판매, 공사, 용역,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
---	--

<p>제56조의2(채용비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) 사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</p>	<p>라. 토지 등 소유자, 분양 및 임대 계약자 등의 개인정보</p> <p>②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개발사업 관련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③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변동 신고 의무자인 개발사업 관련 직원은 공직윤리시스템(www.peti.go.kr)에 부동산 등록 및 신고 한 것을 공사에 부동산 등록 및 신고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개발사업 관련 직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감사부서에서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 및 조사에 응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.</p> <p>제56조의2(채용비리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공개) 사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,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해서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</p>
---	---

제56조의3(사적 이해관계자 제척·기피·회피 적용)

<신 설>

제56조의3(사적 이해관계자 제척·기피·회피 적용) ① 공사·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·구매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·직원은 해당 직무의 직무관계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사적 이해관계자를 제1항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다르게 정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다만, 해당직무의 성격상 사적 이해관계자를 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③ 제척·기피·회피의 신청절차, 방법,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해당직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3]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

구 분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	1차	2차		
일반직	부장	본부장		사장	
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	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
※ 본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[별표3]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

구 분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	1차	2차		
일반직	부장	본부장		사장	
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	
	미래기획부(팀장)	부장		사장	
	담당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	미래기획부(담당)	팀장	부장	사장	

※ 본부장 및 미래기획부 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

<p>[별표5] 가. 훈련성적 평정 부여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훈련성적 평정</th> <th>20</th> <th>17</th> <th>14</th> <th>11</th> <th>8</th> <th>5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육 마일리지</td> <td>일반직 50이상</td> <td>40이상</td> <td>30이상</td> <td>20이상</td> <td>10이상</td> <td>5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훈련성적 평정	20	17	14	11	8	5	교육 마일리지	일반직 50이상	40이상	30이상	20이상	10이상	5이상	<p>평정한다. [별표5] 가. 훈련성적 평정 부여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훈련성적 평정</th> <th>15</th> <th>13</th> <th>11</th> <th>9</th> <th>7</th> <th>5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육 마일리지</td> <td>일반직 50이상</td> <td>40이상</td> <td>30이상</td> <td>20이상</td> <td>10이상</td> <td>5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훈련성적 평정	15	13	11	9	7	5	교육 마일리지	일반직 50이상	40이상	30이상	20이상	10이상	5이상
훈련성적 평정	20	17	14	11	8	5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 마일리지	일반직 50이상	40이상	30이상	20이상	10이상	5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훈련성적 평정	15	13	11	9	7	5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 마일리지	일반직 50이상	40이상	30이상	20이상	10이상	5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
[별표7]						
징 계 양 정 기 준(제49조 관련)						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파면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
1. ~ 9. (생 략)						
10. <신 설>						
11. <신 설>						
12. 기타						
비고.						
1. ~ 3. (생 략)						
4. <신 설>						
5. <신 설>						

개 정 안						
[별표7]						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파면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
1. ~ 9. (현행과 같음)						

징 계 사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0. 부동산의 취득제한 위반							
가. 타인명의 등 부정당한 행위로 취득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직무상 정보 활용 취득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○					
다. 관련 업무 분야 등 취득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○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라. 부동산 등의 거래 신고 및 등록 위 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징계 사유	징계 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11. 이해충돌방지법 위반							
가. 법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나. 법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다.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	○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	○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	○					
라.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징계 사유	징계 기준						비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마.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							
·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							
·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 조치결정 미이행							
·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							
·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바.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12. 기타							
1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		○		고의·과실 또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
2)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		○				
3)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있는 경우		○					
4)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	○						

비고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비밀누설의 적용 대상 정보는 개발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모든 기관 정보를 의미하고 적용 대상자는 직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·직원까지 포함한다.
5.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.